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2018년도 제8차 회의록	
일 시	2018. 06. 22(금) 14:00 ~ 14:30	장 소	CBC B113호
참석의원	정광희 의원, 김진경 의원, 김재환 의원, 임지영 의원, 황태선 의원, 박재범 의원, 오일숙 의원, 최근영 의원, 김준혁 의원, 배진건 의원, 장용석 의원		
불참의원			
간 사	강창호 기획실장, 경희수 기획실 주임		

I. 안 건

○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II. 회의내용

○ 정광희 의장(이하 의장)이 의원정수 1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이하 기획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제대학원 학칙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u>자퇴 또는 제적 후</u> 5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6조에서의 서류제출과 전형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④ 재입학시에 소정의 복적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입학) ① ----- ----- -----. ② ----- <u>자퇴 또는 제적, 수료 후</u> ----- -----. ③ ----- -----. ④ -----. -----
제12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6.9.1.> ②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 4학기 2.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신설> 3. 통합의학대학원·보건산업대학원·미술치료대학원·임상약학대학원 <u>경영대학원</u>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5학기 (제63조의 조기졸업	제12조(등록) ① ----- ----- -----. <개정 2016.9.1.> ② ----- 1. ----- ----- 2. ----- 3.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 3학기 4. ----- ----- <삭제> ----- ----- ----- -----

현행	개정(안)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4 학기)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4. 경영대학원의 경우 학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개정 2017.8.1.> ③ 박사학위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규 등록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5 ----- ----- <신설 2016.12.1.> <개정 2017.8.1.> ③ ----- ----- ④ ----- ----- -----																								
제17조(학위과정 재적연한)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재적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 2014.1.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table><tr><th>구분</th><th>일반대학원</th><th>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th></tr><tr><td>석사학위과정</td><td>8학기</td><td>10학기</td></tr><tr><td>박사학위과정</td><td>14학기</td><td></td></tr><tr><td>석·박사통합과정</td><td>14학기</td><td></td></tr></table>	구분	일반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8학기	10학기	박사학위과정	1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제17조(학위과정 재적연한) ① ----- ----. <개정 2013.9.1, 2014.1.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table><tr><th>구분</th><th>일반대학원</th><th>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삭제>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th></tr><tr><td>석사학위과정</td><td>8학기</td><td>10학기</td></tr><tr><td>박사학위과정</td><td>14학기</td><td></td></tr><tr><td>석·박사통합과정</td><td>14학기</td><td></td></tr></table>	구분	일반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삭제>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8학기	10학기	박사학위과정	1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구분	일반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8학기	10학기																							
박사학위과정	1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구분	일반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삭제>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8학기	10학기																							
박사학위과정	1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② 다음 각 호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재적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의무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휴학기간 2.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사유의 휴학기간 <신설 2014.1.1>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③ 제적 후 재입학 시점까지의 기간은 재적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 이전의 학기수를 재적연한에서 감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적연한은 1회에 한해 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 ----- 1. ----- 2. ----- <신설 2014.1.1> 3. ----- ③ ----- ----- ④ ----- ----- ⑤ ----- ----- -----																								
제21조(지도교수)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배정하고 이를 행정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전공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를 따로 두지 않고 전공주임교수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6.12.1.>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 1.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의학전공 및 기초의학	제21조(지도교수) ① ----- ----- ----- ----.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6.12.1.> ② ----- --. <개정 2016.12.1.> 1. -----																								

현행	개정(안)																								
전공, 간호학과 : 1학기 종료시 2.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약학과 <신설> : 입학시 <개정 2014.1.1> 3. 기타: 제47조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③ 전공 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 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9.1., 2016.12.1.> ④ 지도교수의 자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2. ----- <u>고령친화산업학과</u> ----- <개정 2014.1.1> 3. ----- ----- ③ ----- ----- <개정 2016.9.1., 2016.12.1.> ④ ----- -----																								
제23조(신청 가능 학점) ① 일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6.12.1.> ③ <u>경영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10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계절 학기를 이수할 경우 추가 학점 이수가 가능하나 이 경우 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6.12.1.> <개정 2017.8.1.></u> ④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학점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업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제23조(신청 가능 학점) ① ----- ----- ② ----- -----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6.12.1.> ③ <삭제> ④ ----- ----- ----- ----- <개정 2016.9.1.>																								
제41조(응시자격) 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1학기 이상 마치고 다음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table><tr><th>과정</th><th>대학원</th><th>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th></tr><tr><td>석사학위과정</td><td>12학점</td><td>9학점</td></tr><tr><td>박사학위과정</td><td>42학점</td><td></td></tr><tr><td>석.박사통합과정</td><td>42학점</td><td></td></tr></table>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3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과정	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2학점	9학점	박사학위과정	4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제41조(응시자격) ① ----- ----- -----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table><tr><th>과정</th><th>대학원</th><th>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삭제>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th></tr><tr><td>석사학위과정</td><td>12학점</td><td>9학점</td></tr><tr><td>박사학위과정</td><td>42학점</td><td></td></tr><tr><td>석.박사통합과정</td><td>42학점</td><td></td></tr></table> ② ----- -----	과정	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삭제>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2학점	9학점	박사학위과정	4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과정	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2학점	9학점																							
박사학위과정	4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과정	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삭제>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2학점	9학점																							
박사학위과정	4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제57조(학위과정 수료) 각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	제57조(학위과정 수료) -----																								

현행				개정(안)			
각호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12조 2항에서 정한 정규등록을 모두 수료한 자				1. ----- -----			
2. 최소한 다음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2. ----- <개정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과정	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경영대학원	과정	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보건산업대학원 미술치료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스포츠의학대학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삭제>
석사학위과정	24학점	24학점	30학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24학점	<삭제>
박사학위과정	60학점			박사학위과정	60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단,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가산할 수 있다.				----- -----			
<개정 2013.9.1>				-----, <개정 2013.9.1>			
3. 학과가 정한 전공필수과목과 공통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3. ----- -----			
4. 이수학점의 총평량 평균은 3.0(B ⁺)이상인 자				4. -----			
5. 통합과정의 학생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5. ----- -----.			
제62조(논문 대체 졸업)				제62조(논문 대체 졸업)			
① 특수대학원의 경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6.12.1.>				① ----- -----,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6.12.1.>			
1. 제8장의 자격시험에 합격				1. -----			
2. 논문대체과목 3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5.3.1., 2015.8.1., 2016.9.1.>				2. ----- <개정 2015.3.1., 2015.8.1., 2016.9.1.>			
3. 제57조의 학위과정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 이때 최소학점은 27학점으로 한다. (경영대학원은 최소학점 32학점 이수)				3. ----- -----, <삭제>			
<개정 2015.3.1., 2015.8.1., 2016.9.1., 2016.12.1., 2017.8.1.>				<개정 2015.3.1., 2015.8.1., 2016.9.1., 2016.12.1., 2017.8.1.>			
4. 논문대체과목에 대한 평가는 Project 보고서 또는 졸업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9.1.>				4. ----- -----, <개정 2016.9.1.>			
② 논문대체의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대체과목 수강 이전 학기에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별표 2] 학위의 종류				[별표 2] 학위의 종류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학과			
의학석사(Master of Medicine)				의학석사(Master of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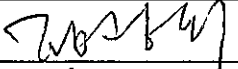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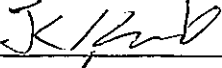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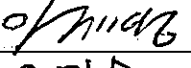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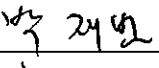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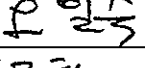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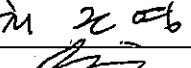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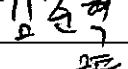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이학석사(Master of Medical Science) 의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Medicine) 이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Medical Science) 통합의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Integrative Medicine) 임상미술치료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Clinical Art Therapy) 보건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Health) 스포츠의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ports Medicine) <신설> 약학과 약학석사(Master of Pharmacy) 약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Pharmacy) 간호학과 간호학석사(Master of Nursing) 의생명과학과 이학석사(Master of Science) 이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cience) 고령친화산업학과 고령친화산업학석사(Master of Active Aging Industry) <신설 2015.5.18.> 2. ~ 8. (생략)	이학석사(Master of Medical Science) 의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Medicine) 이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Medical Science) 통합의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Integrative Medicine) 임상미술치료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Clinical Art Therapy) 보건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Health) 스포츠의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ports Medicine) 임상 및 상담심리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Clinical & Counseling Psychology) 약학과 약학석사(Master of Pharmacy) 약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Pharmacy) 간호학과 간호학석사(Master of Nursing) 의생명과학과 이학석사(Master of Science) 이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cience) 고령친화산업학과 고령친화산업학석사(Master of Active Aging Industry) <신설 2015.5.18.> 2. ~ 8. (생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1. ~ 33. (생략) <신설>	1. ~ 33. (현행과 같음) 34.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대학원의 경우 별도의 학사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 김재환 의원이 제9조(재입학)의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실장이 재적연한 초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게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임을 설명함 ○ 김진경 의원이 앞으로는 각 학과 교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과목을 도출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함 ○ 기획실장이 그 밖의 학칙 개정 사유는 고령친화산업학과 세부전공 신설에 따른 제반 규정 정비,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세칙(내규) 신설에 따른 반영,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상담심리학전공 박사 학위명 신설에 따른 것임을 설명함

- 의장이 상정된 안전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획실장에게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회의결과)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명하다.
- 기획실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의 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III. 폐회선언

○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

확 인	의 원	서 명	의 원	서 명
	정광희		김재환	
	김진경		황태선	
	임지영		박재범	
	오일숙		최근영	
	김준혁		배진건	
	장용석			